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	2년	2년
2.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 ³ /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8년	8년
3. 수도미터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8년
4. 온수미터	6년	6년
5. 오일미터	5년	5년
6. 주유기	2년	2년
7. 요소수미터	2년	2년
8. LPG미터	3년	3년
9. 적산열량계	5년	5년
10. 전력량계		
가. 교류 전력량계		
1) 유도형 전력량계(4형계기에 한정한다)	15년	15년
2)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가) 일반형		
(1) 단상	10년	10년
(2) 3상	8년	8년
나) 특수형		
(1) 단상	13년	13년
(2) 3상	10년	10년
3)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7년
나. 직류 전력량계		
1) 전자식 전력량계	7년	7년
2)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7년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7년	7년
비고		
1.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		

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2.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